

의안번호	2218490
의 퇴 인	신성범 의원
회 답 일	2026. 4. 22.
추계번호	26F2262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－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에 적용되는 법인세·소득세 과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6년말에서 2029년말까지 3년 연장하는 경우, 법인세 및 소득세는 2028년에서 2030년까지 3년간 총 10.2억원(연평균 3.4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 및 소득세, 2028~2030년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10조의2)	-3.4	-3.4	-3.4	-10.2	-3.4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조의2 (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)	-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에 적용되는 법인세·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6.12.31. → (개정안) 2029.12.31.	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10조의2 (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 세특례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2027년 귀속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(사업소득) 신고는 2028년에 이루어짐에 따라 세수효과는 2028년부터 발생
-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적용하여 추계
 - 향후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실적은 최근 5년(2021~2025년)간 연평균 수준으로 발생할 것으로 가정
 - 동 제도의 최근 5년간 특례실적을 살펴보면, 연간 3~4억원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

3. 상세 추계내역

(1) 제도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

- (제도개요) 동 제도는 기업이 국가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하여 해당 과세연도 소득에 익금불산입하고, 추후에 익금으로 산입하도록 허용하는 제도
 - 동 제도는 기업의 연구개발 출연금을 지급받은 시점이 아니라 연구개발비로 지출하거나 연구개발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 익금산입함으로써 과세를 이연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음
 - 동 제도는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촉진을 목적으로 2006년에 도입되었으며, 2024년 세법개정으로 연구개발 출연금의 대상을 기존 정부출연금에서 국가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받은 모든 출연금으로 확대하는 제도변화 존재
 - 특례대상:
(2024년 이전)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른 출연금 →
(2025년 이후)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으로부터 받은 출연금

□ (특례실적) 최근 5년(2021~2025년)간 동 제도에 따른 특례실적은 전액 법인세에서 발생하였으며, 연간 3~4억원 수준으로 집계

○ 동 특례는 최근 5년간 비교적 안정적인 실적 추이를 유지

[표 2]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실적

(단위: 억원)

	2021	2022	2023	2024	2025(잠정)
과세특례 실적	3	4	4	3	3
- 소득세	0	0	0	0	0
- 법인세	3	4	4	3	3

자료: 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년도

(2) 추계방법

□ 향후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최근 5년간 감면실적의 연평균 수준을 따른다고 가정하여 추계

○ 최근 5년(2021~2025년)간 연평균 감면실적: 3.4억원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법인세수 등 감소효과 추정치: 2028~2030년

(단위: 억원)

구분	2028	2029	2030
세수 감소효과	3.4	3.4	3.4

(3) 추계결과

□ 개정안에 따라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에 적용되는 법인세·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6년말에서 2029년말까지 3년 연장하는 경우, 법인세 및 소득세는 2028년에서 2030년까지 3년간 총 10.2억원(연평균 3.4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4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 및 소득세, 2028~2030년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10조의2)	-3.4	-3.4	-3.4	-10.2	-3.4

IV. 부대의견

□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박정환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정환	02-6788-4835	jhpark83@assembly.go.kr